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11. 16 선고 2016가단6707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16. 11. 2.

판결 선고2016. 11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이천시 F 임야 1,540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인슈판넬조 건물 5m², 같은 도면 표시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테트지붕과 일부 인슈판넬조 건물 118m², 같은 도면 표시 31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32,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인슈판넬조 건물 41m², 같은 도면 표시 50, 51, 52, 46, 45,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테트지붕 건물 39㎡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이미주

별지